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3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황유정, 강석주,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혜지, 박성연,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윤영희, 이상욱, 이숙자,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서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및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족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 나. 자녀 양육부담 경감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바꾸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1항)

라.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양육 부담”을 “양육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6.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가족친화”를 “일·생활 균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자녀 <u>양육 부담</u>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p> <p>2. ~ 4. (생략)</p> <p>5. 그 밖에 <u>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u> 등</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 ----- ----- -----.</p> <p>1. --- <u>양육부담</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영유아 <u>양육가정을 위한 이 동서비스 지원</u></p> <p>6. <u>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u></p> <p>7. 그 밖에 <u>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u>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p>	<p>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 -- -----</p>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
-----.

1. 일·생활 균형 -----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3. (현행과 같음)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